- 계약, 하자, 선급금, 건설기계대여 보증 해제 안내
- **보증잔액현황은 공제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-> 공제조합 홈페이지 온라인지점 바로가기 접속 -> (새로운 창 생성) -> 보증 -> 보증이용현황 -> 보증이용내역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 - 현재시점으로 조회시 현재 남아있는 보증내역 보여줌
- **해제가능보증조회는 공제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-> 공제조합 홈페이지 온라인지점 바로가기 접속 -> (새로운 창 생성) -> 보증 -> 보증해제관리 -> 해제가능조회/신청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
[소멸시효 경과 보증(예 : 계약보증은 2년)만 보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경과전 해제시 아래 각 보증별 해제방법대로 해제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]

- *계약 및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2011.11.25 이전 발급분은 보증기간 경과후 5년, 2011.11.25부터 발급분은 보증기간 경과후 2년입니다.
- ※관련서류 중 조합 양식은 조합홈페이지 -> 자료실 -> 업무서식/일반자료에서 다운 가능하십니다
- **아래 적힌 안내는 규정개정등의 사유로 변경된 조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○ 계약보증 해제 관련

①~④중 한가지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

- ①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확인원 또는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
 - 계약이행확인원의 보증채권자 도장은 원인감(인감증명서 첨부) 또는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과 일치
- ②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했을 경우. 단, 선발급 하자보수보증일 경우 준 공일까지 계약보증 해지는 보류됩니다

- 조합 발급분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
- ③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때
 - 보증서 사본 팩스전송
- ④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류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
 - => 실적증명서 및 하자보수보증서상의 금액이 계약보증서상의 계약금액과 다를 경우 변경계약서등 변경된 금액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시 해당 서류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.

○ 하자보수보증 해제 관련

①~②중 한가지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

①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경과 또는

- 보증기간 15일이 경과된 보증은 공제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-> 공제조합 홈페이지 온라인지점 바로가기 접속 -> (새로운 창 생성) -> 보증 -> 보증해제 관리 -> 해제가능 조회/신청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)
- ※ 탈퇴 업체인 경우 보증책임완료확인원 제출 필요할 수 있음

②보증책임완료확인원 제출시

- 보증채권자 도장은 원인감(인감증명서 첨부) 또는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과 일치

○ 선급금보증 해제 관련

①~④중 한가지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

①보증책임소멸확인원 또는 선급금정산확인원

- 보증채권자 도장은 원인감(인감증명서 첨부) 또는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과 일치 *선급금정산확인원으로 보증금액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실 경우 조합에서 요구 하는 서류가 추가로 있으니 고객지원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
- ②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및 선금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완제확인서 제출한 때
- ③조합 또는 다른 보증기관에서 당해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발급한후 90일 경과. 단, 하자보수보증 선발급시에는 준공 후 90일이 경과한때 해제 가능
 - 보증채권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준공된 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후 30일 경과
- ④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류에 의하여 그 준공을 확인한때

○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 해제 관련

- □ 현장별보증
 -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경과 된 때(등록된 보증채권자가 있는 경 우 180일 경과 후)
 - 공사 준공 후 모든 보증채권자가 해제 된 때, 다만 보증기간 도는 준공 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어야함
 - 공사가 준공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확인서를 제출 한 때
- □ 대여계약별 보증
 - 보증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된 때
 - 보증채권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완제확인서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전부 지급을 확인한 때
-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확인서를 제출한 때

○ 보증(계약, 하자, 선급금등) 일부해제 관련

보증책임소멸확인원 (□일부소멸에 체크) 양식 제출

- 보증책임일부소멸확인원의 보증채권자 도장은 원인감(인감증명서 첨부) 또는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과 일치

<보증해제 관련 연락처 : 고객지원실 02-6240-1000>